
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조계원 · 어기구
문대림 · 박선원 · 송재봉
이수진 · 김의겸 · 장철민
박균택 · 전용기 · 윤준병
김성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은 국제물류진흥 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,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그런데 물류 · 제조 · 유통 간 경계파괴,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,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, 건폐율 · 용적률 특례 강화,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

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, 제16조의3 및 제25조의 2 신설 등).
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53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

7.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
방안에 관한 사항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
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의 시장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해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

지

나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

다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

라. 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

마. 「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물류시설이 위치한 지역

바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
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지역 중 둘 이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연결되어 융·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

2.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

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·제6호의3·제9호의2·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교통처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

6의3.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

9의2. 물류 및 제조시설 공동화 또는 집단화 계획

10의2.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계획

10의3.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계획

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의3(세제 및 임대료의 감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“입주국내복귀기업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관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한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활성화,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의 촉진,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
⑤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체의 공장 등에 대하여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.

제23조 중 “100분의 120”을 “100분의 150”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) 기획예산처장관은 국제물류

진흥지역 개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153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(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)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6. (생략) 제8조(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) ① <u>시·도지사</u>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	법률 제2153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(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국제물류진흥지역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</u> 7. <u>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</u>에 관한 사항 8. (현행 제6호와 같음) 제8조(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) ① <u>시·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의 시장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. -----

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 1.·2. (생략) ② ~ ⑧ (생략) 제9조(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)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9조(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해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다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
---	--

제10조(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작성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라. 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

마. 「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물류시설이 위치한 지역

바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
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지역 중 둘 이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연결되어 융·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

2.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

제10조(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작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7. ~ 9. (생략)

<신설>

10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1. · 12. (생략)

④ · ⑤ (생략)

<신설>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교통처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

6의3.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9의2. 물류 및 제조시설 공동화 또는 집단화 계획

10. (현행과 같음)

10의2.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계획

10의3.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계획

11. · 12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2(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

<신 설>

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 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 산림자원조성비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의3(세제 및 임대료의 감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

(이하 “입주국내복귀기업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관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한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

제23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위치하는 시·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또는 제78

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활성화,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의 촉진,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 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
⑤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체의 공장 등에 대하여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.

제23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---

조에도 불구하고 <u>100분의 120</u>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-----<u>100분의 150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제25조의2(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)</u> 기획예산처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---	---